

품질보증시방서

1999.12 제 정

2001. 6 1차개정

2002. 5 2차개정

2010. 1 3차개정

2013. 9 4차개정

2022. 9 5차개정

본 시방서는 기자재공급 계약자, 공사시공 계약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요건으로서, 모든 계약자는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한 품질활동을 보증하기 위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한다.

1. 일반사항

- 가.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 제작, 시공의 품질보증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, 계약 시 본 품질보증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서(QP), 검사 및 시험계획서(ITP) 각 3부를 작성하여 구매 계약 시에는 제작 착수 전까지, 공사 계약 시에는 착공 전 품질안전회의 전까지 한전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나. 계약자는 승인된 QP 및 ITP에 따라 현장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해야 한다.
- 다. 계약자는 공급역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자(이하 '하도급자')의 품질관련서류를 검토,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하도급자로 하여금 계약자의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. 또한 계약자는 하도급자의 QP와 ITP의 승인결과를 발주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.
- 라. 한전(또는 그 대리인)은 계약자(또는 그 하도급자)가 수립한 품질계획서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진단,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자 및 그 하도급자의 공장, 설비 및 서류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, 전화 등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자는 품질진단, 품질점검 및 검사 등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한전(해당부서)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한전(해당부서)은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.
- 바. 한전은 계약자의 부적절한 품질보증활동으로 인하여 품질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진행중인 공정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, 계약자는 발생 원인분석,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이를 해소하고 서면으로 공정 재개를 요청하여야 하며, 작업중지로 인한 공급지연은 납기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다.
- 사. 검사 및 시험은 본 시방서, 설계기준, 관련규격, 제작관례에 따라 시행하되, 내용

이 상이한 경우 보다 엄격한 항목을 적용한다.

아. 계약자는 자체 설비로 검사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, 국가공인기관 또는 한전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자.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 수행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완하는 등 시정조치 후 재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차. 한전(또는 그 대리인)이 검사 및 시험결과를 검토,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.

카. 계약자는 최종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품질관련 서류와 함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, 납품된 제품과 관련서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 되면 한전은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타. 본 시방서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.

- 1) 계약자 : 계약에 의해 한전에 역무를 공급하는 자
- 2) 절차서 :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,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, 작업순서 등을 기록한 서류
- 3) 품질계획서 : 특정 프로젝트, 특정제품, 특정프로세스 또는 특정계약에 대하여 품질목표를 세우고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와 관련된 자원이 누구에 의해 언제 적용되는지를 규정한 문서
- 4) 부적합사항 : 업무나 품목의 품질이 불만족하거나 불확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성, 성능, 서류 또는 절차상의 결함
- 5) 시정조치 : 품질위배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행위

2. 검사 및 시험 일반

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.

가.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(ITP)를 작성하여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)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는 제작자(시공자, 감리자), 품명 및 수량, 공정별 검사 및 시험항목, 적용 규격 및 코드, 필수확인점(H), 입회점(W), 성적서 검토(R), N/A, 수행예정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다.

2)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항목에 따라 검사 및 시험절차, 적용기준, 판정기준 등을 명시한다.

3)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자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검토를 거쳐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나. 한전은 계약자가 제출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필수확인점, 입회점 등을 검토하여 통보한다.

다. 계약자는 한전이 필수확인점, 입회점으로 결정한 검사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행 7일전에 대상항목별로 확정된 일정을 통보한다.

라. 한전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항목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의에 따라 추가로 입회할 수 있으며 필수확인점, 입회점으로 결정된 검사 및 시험항목에 대한 입회 불가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를 통보한다.

마. 계약자는 제작/시공 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한전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한다.

바. 한전(또는 그 대리인)은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판정기준에 따라 합·부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한다.

3. 현장 검사 및 시험

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.

가. 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계획서(ITP)를 작성하여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나.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장 검사 및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며,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품질계획서(QP)에 검·교정 여부 등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확인받아 기록하여야 한다.

- 다. 기자재의 현장 검사 및 시험은 한전과 계약자 쌍방이 시행준비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한다.
- 라. 한전은 계약요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공급기자재의 점검,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, 연료, 용수 및 기타 물품을 공급한다.
- 마. 기자재 공급계약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 중 기기, 계기, 제어장치 또는 회로 등의 조정 및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수행한 후 준공도면(최종도면)을 요구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.
- 바. 기자재 공급 계약자는 공급기자재의 설치,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완료한 후 한전의 공사감독 부서에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서류를 제출한다.
- 사. 배전분야 공사와 직접 관련된 지입자재에 대해서는 한전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부득이하게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전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전까지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4. 시공품질 점검표

- 가. 시공 계약자는 한전에서 제공한 해당 분야별 시공품질 점검표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시공품질점검표에 표시된 필수확인점(**표시공종)은 확인자의 확인 없이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.
- 다.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점검(측정)자는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작업자가 해야하며, 항목별 합·부 판정은 확인자가 해야 한다.
- 라.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작업종사자 기입란은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가 작성하고 확인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마. 시공품질점검시 은폐,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하여 품질기록관리를 하고 기성고 및 준공검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.